

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30일

신청인은 「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, 보상금을 받고자 합니다.

결정번호	제	호	결정일:
결정주문			
신청인	성명(법인명):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:
	주소:		
	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		
대리인	성명(법인명):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:
	신청인과의 관계	의	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
지급계좌	예금주:		은행명:
	계좌번호:		신청금액: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1.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※ 신청인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공동권리자별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고,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를 첨부합니다. 2.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말합니다) 사본 1부
------	---